

[별표 1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605,200	21	3,059,300
2	1,653,800	22	3,172,200
3	1,703,100	23	3,284,300
4	1,752,200	24	3,396,400
5	1,801,800	25	3,508,600
6	1,851,300	26	3,621,200
7	1,900,100	27	3,738,600
8	1,948,900	28	3,855,800
9	1,998,400	29	3,978,300
10	2,052,500	30	4,101,300
11	2,105,400	31	4,223,800
12	2,159,600	32	4,346,200
13	2,257,900	33	4,470,500
14	2,356,700	34	4,594,500
15	2,455,300	35	4,718,600
16	2,554,200	36	4,842,200
17	2,651,900	37	4,949,900
18	2,754,200	38	5,057,600
19	2,856,000	39	5,165,600
20	2,957,600	40	5,272,800

비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